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부로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였다.

— 편집자주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가금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금류의 전염병을 말한다.

②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바이러스·약병원성 바이러스 및 비병원성 바이러스를 말하며, 이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신고 등)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가금(이하 “감염가금”이라 한다)이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금(이하 “의사감염가금”이라 한다)을 발견한 가금의 소유자(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수의사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감염가금 또는 의사감염가금을 발견한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 요령(농림부훈령 제793호 '94. 8. 6)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

정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발생사실 발표) 농림부장관은 병성감정결과 분리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병명·발생장소·발생경위·방역조치 개요 등에 대하여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 사실을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의 양축농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방역조치) ① 시도지사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군을 살처분하여야 하며,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종란과 식란을 취급하는 부화장(이하 “관련 부화장”이라 한다)의 종란 및 식란은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기구·장비 및 사료 등은 소독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

장 및 인근지역(시도지사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살처분, 소독실시 및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가축·사람·물품 등의 이동, 반입 및 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내의 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가금의 이동을 제한(시도지사가 지정한 닭도축장으로의 이동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이동제한기간중에 전화 등으로 가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오염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출하되는 닭도축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경계지역안에 위치한 닭도축장을 우선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의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란과 종란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식란 :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열처리 또는 사용처의 제한 등 조치

2. 종란 : 부화장을 지정하고 이동제한 기간중에 생산된 종란으로 부화한 초생추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하여 3~4주간 사양관찰. 이 경우 타 시도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사양관찰하도록 조치

제6조(이동제한중 조치) ① 시도지사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기간중 오염지역안의 종계장·경계지역안의 양계장 및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안의 닭도축장에 대한 검사 등의 조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종계장 : 채혈한 혈청 및 폐사한 가금을 국립수위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받도록 조치

2. 양계장 : 채혈한 혈청을 검역원에 송부하여 혈청검사를 받도록 조치

3. 닭도축장 : 채혈한 혈청을 검역원에 송부하여 혈청검사를 받도록 조치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송부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세척 및 소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중인 가금과 알을 살처분·매몰한 발생농장 및 종계장(부화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살처분·매몰 조치 완료와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가금의 소유자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요령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재입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 대한 폐쇄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척 및 소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고 폐쇄기간 중에는 가금을 입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생농장의 재사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장폐쇄기간 경과후 당해 농장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농장시설, 장비 및 주위환경에 대한 시료를 채취, 검역원에 바이러스검사를 의뢰하여 검역원장이 음성으로 판정한 때에 가금을 입식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농장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가금을 재입식한 날부터 30일까지는 주 2회, 그 후 5개월 동안은 2주에 1회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검역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입식한 날부터 5개월까지는 발생하는 폐사체를, 약 30

일 및 약 5개월이 되는 날에는 재입식군에서 채취한 혈청을 각각 검역원에 송부하여 바이러스 및 혈청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증상 및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때 음성농장으로 인정하며, 방역감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재입란) ① 종란이 입란된 관련부화장에 대한 폐쇄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척 및 소독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하여 정하며, 폐쇄기간 중에는 종란을 입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련부화장의 재사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 폐쇄기간 경과후, 당해 부화장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부화장시설, 장비 및 주위환경에 대한 시료를 채취, 검역원에 바이러스검사를 의뢰하여 검역원장이 음성으로 판정한 때 종란을 입란할 수 있으며,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부화장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양성판정을 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종란을 재입란한 30일 후에 당해 부화장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부화장시설, 장비 및 주위환경에 대한 시료 채취, 검역원에 송부하여 바이러스 분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때 음성부화장으로 인정하며, 방역감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이동제한 해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은 해당지역내에서 마지막 발생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주간의 관찰기간을 두고 해당지역내에서 추가로 실시한 바이러스 분리검사 및 혈청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제한다.

제11조(보상금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금 또는 소각·매몰한 물품 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

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의 실시에 관련 소각비·운반비·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조치) ① 시도지사는 병성감정결과 분리된 바이러스가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된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 등의 실시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 및 이동제한 명령
3. 가금의 정기적인 임상관찰
4. 야생조류 등의 축사침입 및 급수원에 접근방지
5. 유사질병인 뉴캐슬병 예방접종 철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발생계군의 격리, 계군별 소독철거, 관리자와 사용기구의 구분 및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조기도태를 유도하고 3주이상 계사를 비우도록 발생농장 소유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부화장에서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에게 제2항의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외에 부화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으며, 생산·보관 중에 있는 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장을 일시 정지한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산란회복후에 채란한 종란에서 생산된 초생추를 3~4주간 사양관찰하도록 하여 재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부장관은 병성감정결과 분리된 바이러스가 약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

정된 경우에도 야외농장에서 이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사 또는 산란저하가 확인되었거나 지속적인 바이러스 배출이 확인되어 병원체의 확산이 우려될 경우 혹은 바이러스의 잠재적 병원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취급여부의 결정은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가금인플루엔자 예찰) ① 검역원장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방지와 조기색출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국적인 가금인플루엔자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는 검역원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표2의 요령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결과 가금인플루엔자 혈청 H5 및 H7이 판정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한 후 병원성 분류를 위한 실험실 진단을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결과 가금인플루엔자 혈청형 H5 및 H7 외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농장내 모든 동거 가금군에서 채취한 혈청을 별표2의 요령에 의거 검역원에 추가로 송부하여 혈청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후 3주 동안 양성혈청군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결과 및 양성혈청군에서 발생한 폐사한 가금을 검역원에 통보(송부)하여 병성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다른 요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병원성 분류기준

1. 가금인플루엔자A형 바이러스중 국제무역사무국(OIE)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액을 시험계 8수에 접종한 후 10일 이내에 75% 이상의 폐사를 보이는 경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2. 제1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금인플루엔자 혈청형 H5, H7 바이러스는 분자생물학적 특성시험결과 바이러스의 HA cleavage site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 염기배열이 확인되었을 경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단, 제1호의 시험계 접종시험에서 1수 내지 5수의 폐사를 유발하였으나, 바이러스의 HA cleavage site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 염기배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3. 가금인플루엔자 혈청형 H5, H7 이외의 바이러스 중 제1호의 시험계 접종시험에서 1수 내지 5수의 폐사를 유발하고, 트립신을 처리하지 않은 조직배양 세포에 접종시 바이러스의 증식이 확인될 경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단, 바이러스의 증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4. 가금인플루엔자 혈청형 H5, H7, H9 바이러스중 제1호의 시험계에서 폐사를 유발시키지 않더라도 야외농장에서 이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사 또는 산란저하가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채취시료로부터 지속적인 바이러스의 배출이 확인되어 병원체의 확산이 우려될 경우 우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취급하고, 검역원장이 제2호 및 제3호의 실험실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농

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가금인플루엔자 혈청형 H5, H7, H9 외의 바이러스 중 제1호의 시험계 접종시험에서 폐사를 유발시키지 않더라도 야외농장에서 이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사 또는 산란저하가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채취시료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의 배출이 확인되어 병원체의 확산이 우려될 경우 약 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6. 가금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비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별표2]

채혈 및 검사재료 송부요령

1. 농장당 검사 가금수는 2개군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1개군당 조사수수는 10수 이상으로 한다.
2. 조사가금군의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송부하는 혈청에 대하여는 1수당 1ml 이상씩으로 하고, 혈청은 56℃에서 30분간 불활화 처리를하여 에펜돌프 튜브에 담아 뚜껑에는 각각 혈청의 일련번호를 튜브 측면에는 지역명, 농장명, 계군명, 채혈년월일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4. 혈청송부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채혈내역표를 반드시 첨부한다.
 - ① 농장명
 - ② 축주명
 - ③ 농장주소
 - ④ 연락처
 - ⑤ 계군명
 - ⑥ 가금종류(산란계, 산란중계, 육용계, 육용중계, 기타 가금품종)
 - ⑦ 채혈년월일

⑧ 채혈시 주령

⑨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5. 송부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별표3]

소독실시요령

소독실시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구체적인 소독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다.

1.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는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살처분 장소의 먼지를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소독액을 공중에 살포하여야 한다.
3.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된 물이 한곳에 모여 저장될 수 있도록 임시로 구덩이를 만들거나 또는 지정된 정화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독액의 살포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세정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감염가금 또는 의사감염가금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은 모아서 소독약에 담그거나 끓여야 한다.
6. 농장 전체에 대하여 충분히 소독하여야 한다.
7. 정화조, 하수도 및 배수구에도 소독약을 투입하여야 한다.
8. 쥐 등 야생동물과 전염병 매개 곤충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소독약은 2% 가성소다, 2% 가성가리, 4% 탄산소다, 10% 포르말린액의 증기 소독을 1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0. 관리인 등의 출입에 의한 바이러스 비산방지에 유의하고, 특히 외부로 출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양개**